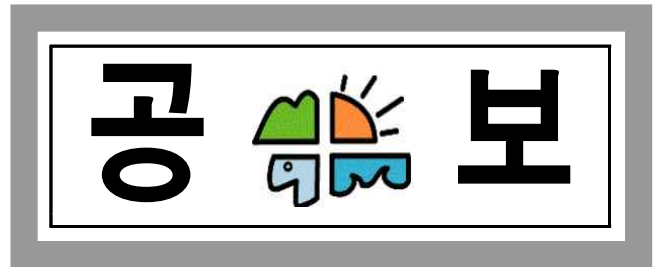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490호 2023년 9월 15일(금)

조 례

-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
-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

고 시

- 하천점용허가 고시 11

공 고

-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공고 12
-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3

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9월 15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3039호

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

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속초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
2.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
4.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
5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
6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7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속초경찰서장
2. 속초해양경찰서장
3. 속초소방서장
4.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
5.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
6.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7.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, 소관 업무별 재난 관련 담당관·과·소장
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

사람

-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

다)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

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 관련 위원만을 재적위원으로 본다.

제8조(위원의 활용) 새로운 정책의 개발·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)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회의록의 비치)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,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지역축제 담당 부서 또는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9월 15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3040호

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조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
제4조 중 “제34조제1항”을 “제34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시장은 당사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.

제6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)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 기준

(제4조 관련)

(단위 : 천원)

근거법령	위 반 사 항	위반 횟수별 부과금액		
		1차	2차	3차
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	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10,000	20,000	30,000
	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	1,000	2,000	3,000
	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)을 사용한 자	1,000	2,000	3,000

주석 1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단, 4차 위반행위부터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.

●속초시 고시 제2023-128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5일

속초시장

1. 하천의 명칭		쌍천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	성 명	속초시장(미래전략과)
	주 소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	목 적	공작물 설치
	개 요	상도문 돌담마을 숲길공원 조성사업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	위 치	속초시 도문동 285-1, 속초시 도문동 33-1
	면 적	11,699.6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		2023. 9. 7.~영구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속초시 공고 제 2023-885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5일

속초시장 (직인)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속초시장(미래전략과)		
	대표자 (성명)		주소	속초시 중앙로 183
소하천명		학무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속초시 도문동 283, 도문동 371-1, 도문동 371-44		
	면적	645.1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2023. 9. 7.~영구		
	목적 및 사유	인공구조물 설치		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09. 08.

속 초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23. 09. 11. ~ 2023. 09. 25. (14일간)
2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, 게시판,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당사자		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:2023.09.07.)	김옥○	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/3	건축물 부존재	영랑동 22	목조/ 주택 69.02㎡

4. 유의 사항

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(☎033-639-15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